



2023년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2023년 10월 28일

「B」 책형

지방직 7급 지방자치론 해설

1 문항별 정답률

번호	정답률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1	90.4	2.8	3.9	90.4	2.8
2	92.6	3.1	2.6	92.6	1.7
3	90.6	2.2	3.1	4.1	90.6
4	74.7	6.1	6.3	74.7	12.9
5	69.7	69.7	4.6	11.6	14.2
6	82.8	5.5	6.1	5.7	82.8
7	81.2	8.5	81.2	7.2	3.1
8	63.5	4.6	5.2	26.6	63.5
9	93	1.5	93	3.1	2.4
10	87.6	3.1	87.6	2.6	6.8

번호	정답률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11	85.4	85.4	9	3.1	2.6
12	41.9	15.3	41.9	23.1	19.7
13	82.1	82.1	6.8	5.5	5.7
14	78.6	4.6	7.6	9.2	78.6
15	73.8	4.6	11.4	10.3	73.8
16	89.3	2.2	2.6	5.9	89.3
17	58.1	11.4	5.9	58.1	24.7
18	78.4	5	78.4	12.4	4.1
19	91.9	91.9	2.2	3.5	2.4
20	59.8	7	25.5	7.6	59.8

*매가공무원 풍서비스 23년 6월 10일 오후 3:00 기준

2 출제영역분석

지방자치의 기초적 이해	3	지방자치와 주민의 참여	5
지방자치의 기본적 체계	2	지방자치의 재정	4
지방자치의 운영	3	정부 간 관계	3

3 출제경향분석

기출 문제	20	기출변형 문제	-	신유형 문제	-
-------	----	---------	---	--------	---

4 출제문제유형분석

말 바꾸기	짚찾기	내용 분류	개념	순서 연결	제도 및 이론비교	법령 문제
1	-	1	1	-	3	14

지방자치의 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을 강조한다.
- ②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국가에 의해 부여된 권리로 받아들인다.
- ③ 단체자치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 ④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법률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 이론 비교

출제영역 단체자치 vs 주민자치

- ①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 관계에 중점을 두는 것은 주민자치로 참여를 핵심으로 한다.
- ② 단체자치에서의 자치권은 전래권설(자치권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을 취한다.
- ③ 단체자치는 주민자치와는 달리, 사무구분에 있어 국가의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엄격히 구분한다.
- ④ 주민자치는 주민의 참여와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정치적 측면)를 강조하고, 단체자치는 중앙으로부터의 독립(법률적 측면)을 강조한다.

지방정부의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업무에 대한 행정책임이 명확하다.
- ② 단층제는 중층제에 비해 정부 간 보고체계에 따른 행정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
- ③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에 불리하다.
- ④ 중층제는 단층제에 비해 의사소통 내용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 이론 비교

출제영역 중층제 vs 단층제

- ① 단층제는 중간계층을 두지 않음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든다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 ② 단층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정부와 연결되어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 ③ 중층제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구역 안에 포괄하고 있어서 한 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첩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층제에 비해 지방정부 간 수직적 분업에 유리하다.
- ④ 중층제는 정보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유하는 계층이 많을수록 의사의 누수와 정보의 왜곡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②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③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④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상 중 하

출제유형 III 내용분류 + VII 법령

출제영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 ①, ②, ③ ④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각호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 ④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

동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3.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더라도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의결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발의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 + VII 법령

출제영역 지방의회 VS 지방자치단체장

- ①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51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

동법 제13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장 x)이다.

동법 제28조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동법 제29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의원이 퇴직하거나 직을 상실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구역변경의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이 변경된 때
- ②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 ③ 주민소환투표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 때
- ④ 농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 취임할 때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 VII 법령

출제영역 직업공무원제도

- ① ②, ④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지방의회의원은 퇴직 된다.

지방자치법 제90조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3조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은 선결처분을 한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 + VII 법령

출제영역 지방의회 vs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①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동법 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

동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제73조에 따른 의결정족수에 미달될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지 못한 선결처분은 그때부터(선결처분을 한 시점 x)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동법 제12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치권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딜런의 룰(Dillon's Rule)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미국 주(州) 정부에 의해 명시적으로 위임 받은 권한과 그에 필연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영국에서 등장한 월권금지 원칙(ultra vires doctrine)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지방정부가 행하는 어떠한 활동도 존중되어야 한다.
- ③ 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는 사무배분에 있어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지방정부가 우선 처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무는 상위 지방정부나 국가가 단계적으로 보충할 것을 강조한다.
- ④ 미국의 홈-룰(Home-Rule)은 주(州)의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치현장을 만들고 현장에 규정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출제영역 집권 - 분권에 대한 역사적 원칙과 제도

- ①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은 지방정부는 주(州) 의회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권한만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이었다.
- ② 월권금지 원칙(ultra vires doctrine)은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사항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③ 보충성 원칙은 중앙과 지방의 기능배분에 있어 지방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관할권으로 인정하고,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관여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④ 홈룰(Home-rule)은 주(州)의회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현장(홈룰)을 제정할 수 있는 완전한 자치권 획득을 위한 운동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 ㄴ.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 ㄷ. 구급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통지를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시·군 및 자치구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되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 ㄹ. 지방의회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의요구에 대하여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상 중 하

출제유형 IV 개념 + VII 법령

출제영역 지방자치단체장

ㄱ 지방자치법 제105조 제9항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ㄴ 둘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 x)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동법 제11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출될 때까지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가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한다.

ㄷ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

동법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으면 지체 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실을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ㄹ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제2항 각호

동법 제121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1.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

지방예산 편성 및 의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없더라도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는 시·도의 경우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우리나라 재정제도

① 지방재정법 제36조 4항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142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자치재정권

- ①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

지방자치법 제139조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3조 【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농어촌특별세
- ② 담배소비세
- ③ 지방소득세
- ④ 자동차세

상 중 하

출제유형 III 내용 분류 + VII 법령

출제영역 지방세

- 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 ②, ③, ④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SUMMARY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구분	특별시·광역시세	자치구세	도세	시·군세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국세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21.12.31까지 연장)			
	관세				

「지방재정법」상 정부 회계의 운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과는 별개로 회계·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약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③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우리나라 재정제도

- ①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 단서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회계·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예약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의2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약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약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약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동법 제9조 【회계의 구분】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재정법 제9조 제4항

동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도 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 운영상 면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눌 때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구역변경 및 조정

-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 ②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

동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③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동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7조【구역의 변경 또는 폐지·설치·분리·합병 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 ③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담하며, 그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동법 제209조 【해산】 ①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특별지방자치단체

① ○ 지방자치법 제199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99조 【설치】 ④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시·도 사무의 위임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무의 위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지방자치법 제205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205조 【집행기관의 조직 등】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겸할 수 있다.

③ ○ 지방자치법 제206조 제1항, 제2항

동법 제206조 【경비의 부담】 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사무처리의 수혜범위 등을 고려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경비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 등 해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시·도지사 x)의 승인을 받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해산하여야 한다.

법령상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시·도는 5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③ 주민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주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주민은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없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우리나라 주민참여제도(종합)

- ① 시·도는 300명(500명 ×)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③ 주민은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주무부장관 ×)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소송】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을 감사 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제21조제9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이 끝난 날을 말한다)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 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중앙집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지배적·강압적 관계가 아니라 지도적·협동적 관계로 설정한다.
- ② 신지방분권은 절대적·소극적 분권이 아닌 상대적·적극적 분권의 특징을 지닌다.
- ③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는 신지방분권화를 촉진했다.
- ④ 미국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와 프랑스의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및 레지옹(Région)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은 신중앙집권의 대표적 사례이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 이론 비교+IV 개념

출제영역 신중앙집권화 vs 신지방분권화

- ① 절대국가의 중앙집권이 지배적·강압적 관계였다면 신중앙집권은 지도적·협력적 관계로 설정한다.
- ② 자유방임주의 국가의 지방분권이 절대적·소극적 분권이었다면, 신지방분권은 상대적·적극적 분권이다.
- ③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확산으로 신지방분권화가 등장하였다.
- ④ 미국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와 프랑스의 코뮌(Commune), 데파르트망(Département) 및 레지옹(Région)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은 신지방분권(신중앙집권 x)의 대표적 사례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와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역 간 균형발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이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설립한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 ④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을 둔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중앙지방협력회의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지방자치법 제187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자치법 제187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②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 ③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구성 및 운영】
 ① 협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④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 x)을 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2024 신용한 지방자치론 p.242, 258, 259

정답 ③

18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엘코크(Elcock) 또는 로즈(Rhodes)의 대리인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의존한다.
- ㄴ. 중앙정부의 통제에 대한 수용 여부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속한다.
- ㄷ. 주요 정책 영역에서 지방의 정치행위자들이 상호 경쟁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 ㄹ. 주요한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료에 의해 발의되고 결정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상 중 하

출제유형 I 말 바꾸기+IV 개념

출제영역 정부 간 관계 모형

ㄴ, ㄷ 대리인 모형은 지방은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위임된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재량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2023 신용한 지방자치론 p.237

정답 ②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권한 등

①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7. 국제교류 및 협력

-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② 지방자치법 제31조

동법 제31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94조

동법 제194조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 설립·유치 또는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운영비용 등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95조 제1항

동법 제195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자치경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이 있다.
- ② 시·도 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자치경찰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상 중 하

출제유형 VII 법령

출제영역 자치경찰제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제31조 【직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하부조직, 공무원의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동법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동법 제23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